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재난안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봉수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4-81 |
|----------|-------|

발의연월일 : 2014. 9. .

발 의 자 : 이봉수,강희향,김운정,
김효식,백남환,서종수,
이학래,유호렬,전승학,
한일용,허정행의원
(11명)

1. 주 문

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마포구민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풍수해·지진·화재 및 건축물 공사장 관련 피해 등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비 능력을 확보함은 물론 안전한 마포를 만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재난안전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 수는 10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세월호 사고 발생 후 안전에 대한 의식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 등 근본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최근 잠실 롯데월드 공사와 지하철 9호선 공사로 석촌지하차도에 싱크홀이 연속 발생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이미 전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바, 우리구에서도 홍대 인근 롯데씨네마 영화관 천장이 무너져 관객이 대피하는 등 많은 사고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에서 벌어지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의 하나로 관내에 있는 호텔, 영화관, 공영주차장, 시장 등 공공 대형 건축물과 공공 다중집합장소 및 쓰레기 소각장, 발전소, 빗물펌프장 등 기반시설물 등에 대한 재난안전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안전권’ 의무를 이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 따라서 마포구민을 대표하는 마포구의회는 의회차원에서 주민의 안전증진과 지진·화재 등의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안전관리 점검 및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불감증 해소에 기여하고자 마포구의회 재난안전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25조의 2